

대구대학교·경북지방경찰청·금융감독원대구지원

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금융범죄·피해예방 협약

대구대학교와 경북지방경찰청 그리고 금융감독원대구지원(이하 '각 기관'이라 칭한다)은 대구·경북 지역의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금융범죄·피해예방 및 금융소비자교육을 통하여 이들이 각종 금융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상호 교류와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각 기관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지역민 특히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합리적 금융소비자 교육과 함께 지능화되는 각종 금융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 기관 간의 상호 교류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교육, 연구 및 사업의 수행을 통해 공동의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사업)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- 가. 각 기관이 보유한 인적, 물적 자원의 상호교류
- 나. 지역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금융소비자교육
- 다. 지역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범죄예방교육
- 라. 기타 지역의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관련 연구 사업

제3조(협약의 이행) 각 기관은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지역다문화사회정책, 금융소비자교육 및 금융범죄예방사업에 관련된 정보와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며, 각 기관 상호 간의 인적·물적 자원 활용에 적극 협조한다.

제4조(협력사업 연락기관) 각 기관은 협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하여 각 기관의 업무연락 실무부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.

- 가. 대구대학교 :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
- 나. 경북지방경찰청 : 보안과
- 다.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: 금융소비자보호실

제5조(신의성실) 각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약을 이행하고 세부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6조(효력) 이 협약은 각 기관의 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협약의 효력기간과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일방이 해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2013. 9. 4.



대구대학교
DAEGU UNIVERSITY

총장 홍덕률

홍덕률



경북지방경찰청

청장 김귀찬

김귀찬



금융감독원대구지원

지원장 이창수

이창수